



2024년 1월

제258회 임시회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 해 시
(대중교통과)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1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위·수탁기간이 2024.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 필요성

- 대중교통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정적 차량 관리, 인프라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교통약자콜택시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

- 소재지 : 김해시 삼정동 359번지/ 차고지 면적 1,540㎡
- 규모 : 차량 50대, 인력 52명(운전원 50, 관리직 2)

- 위탁기간 : 2024. 4. 1. ~ 2026. 3. 31.(2년)
- 소요예산 : 2,959백만원('24년 당초예산) ※ 붙임 1 참조
- 위탁업무
 -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행 등 운송사업 전반
 - 교통약자 콜택시의 차량 안전 점검 등 관리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

라.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법

- 수탁자격 : 김해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평가기준
 - 객관적 평가 : 경영상태, 교통사고 공제보험요율 등 평가(30점)
 - 주관적 평가 : 사업수행능력, 계획의 타당성, 운영관리 방안 등 평가(70점)
- 평가방법
 - 객관적평가 : 1차 담당부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 주관적평가 :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근거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이동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마. 추진일정

- 2024. 2월 : 모집공고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 2024. 3월 :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2024년 소요예산 세부내역 1부.
-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영현황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1

2024년 소요예산액 세부내역(운송원가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원가(원)
노무비	직접노무비(50명)	2,009,439,304
	간접노무비(2명)	79,823,441
	노무비 합계	2,089,262,745
경비	보험료	147,231,636
	복리후생비	180,101,330
	유류비	320,511,174
	차량정비관리비	131,719,802
	세금과공과	2,344,486
	기타경비	15,011,205
	경비 합계	796,919,633
원가 합계		2,886,182,378
이 운		72,000,000
총원가		2,958,182,378

붙임 2

김해교통약자콜택시 운영현황(2023년)

수탁업체	소재지	대표이사	운행대수	종사원 수	
				관리직	운전직
(주)김해BUS	삼정동 359번지	정민준	50	2	50
위탁금	2,892백만원				
운행수입	190백만원				
이용자수	81,825명 / 년(6,818명 / 월)				
위탁기간	2022. 4. 1 ~ 2024. 3. 31.(2년)				
<p>신청 :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배차 ⇒ 이용요건 확인 ⇒ 탑승(이동) · 예약 : 이용전일 21부터 24시까지(당일 운행20%이내) 					
이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1급 또는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근무현황 : 24시간, 4개조 운행					
근무시간	근무조(인원)		근무인원	비고	
계	4개조, 50명		50		
23:00~07:00	야간조(2명)		2	1인 8시간 교대근무	
07:00~08:00	오전조(16명)	주간조(18명)	16		
08:00~15:00			34		
15:00~16:00	오후조(14명)		32		
16:00~17:00			14		
17:00~23:00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도지사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도 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재계약하는 경우
2. 청소, 주차장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공기관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